

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. 9. 1 선고 2022가단633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8. 18.

판 결 선 고 2022. 9. 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4. 24.부터 2022. 6. 15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 채권자는 원고로,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)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김용찬

청 구 원 인

1. 채권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신청의 C는 2019. 11. 19. 채무자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금50,000,000원을 채권자 회사의 법인계좌 하나은행 (계좌번호 1 생략)에서 채무자의 농협계좌 (계좌번호 2 생략)로 송금하였습니다.

2. 따라서 채무자는 아무런 권원없이 위 돈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채권자 회사는 위 돈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.

3.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수차례 위 부당이득한 돈의 반환을 구두 요청한 바 있고, 2020. 4. 22. 에는 위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송부하여 2020. 4. 23.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습니다.

4.그러나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채무자는 위 돈의 반환을 거절하므로 채권자는 부득이 위 청구금원 및 내용증명원 송달 다음날인 2020. 4. 24.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%,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특례법 소정의 연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

